

대학원 약학과 운영 내규

개정 : 2018. 09. 11.

개정 : 2019. 03. 22.

개정 : 2025. 09.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약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약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약학과 소속 교수들은 약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취득학점)

-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은 33학점(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은 45학점(연구지도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은 78학점(연구지도 18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④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 이수자의 경우 취득학점 기준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조 (과목개설)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조 (교·강사 배정)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는 입학과 동시에 선정하며,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확정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하여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생의 경우 주저자(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로서 1편 이상의 SCI급 학술지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게재승인 시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박사과정생의 경우 주저자(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로서 2편 이상의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게재승인 시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위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②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게재승인 시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하거나 종합학력점수 90점 이상의 경우에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종합학력시험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및 면제) 외국어시험에 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대학원 학칙 제35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을 준용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약학과의 석사학위 취득 방법은 학위논문으로 한다. 따라서 약학과 석사학위 취득은 33학점 이수,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학위논문 작

성·심사·통과 과정을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불가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4조 (논문심사일정)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은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 ②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석사논문 3인, 박사논문 5인으로 구성하며, 박사논문 심사위원 중 2인은 외부에서 선정한다.
- ③ 논문 지도교수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약학과는 학위논문 제출에 의해서만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약학과는 학위논문 제출에 의해서만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제8장 학과 운영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전체교수회의(전임교원)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과반수 출석, 출석 교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19.03.22.)

제1조 (적용) 이 내규(개정안)의 제10조 외국어시험 관련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 개정전 학과 내규를 적용한다.